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9. 27.

도시환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건축과)
- 제출일자: 2024. 9. 12.
- 회부일자: 2024. 9. 12.
- 상정 및 의결: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(2024. 9. 27.)

## 2. 제안이유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설치 근거인 「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」이 2002년 12월 폐지되어 회계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
- 2003년 7월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적용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(2024. 7. 11. ~ 7. 31.): 의견없음

- 행정규제 심사결과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: 해당사항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조례·규칙 심의결과: 원안 가결

**5. 전문위원 검토의견**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폐지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** 특이사항 없음

**7. 심사결과:** 원안가결